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오승규(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I. 검토 배경
- II. 선정 대리인 제도의 개요
- III.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현황 및 타 제도와의 비교
- IV.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입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어 원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청구에서 영세 납세자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음
 - 목적은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 강화이며 국세 분야 국선대리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임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선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신청 자격과 선정 대리인 자격(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신청 자격 요건에는 ① 인적 요건, ② 종합소득금액, ③ 소유 재산 가액, ④ 청구·신청세액, ⑤ 세목 그리고 ⑥ 소극적 요건으로서 고액·상습체납자 등이 아닐 것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세 요건도 거의 유사함
 - 선정 대리인에 대한 수당 지급은 대부분 실비변상적 성격에 머물러 있음
- 선정 대리인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적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인용 결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상의 성과도 미미하여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다소의 등락을 거쳐 20% 이상의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선대리인과 비교하여 매우 저조함
- 초기 실적의 부진 원인으로는 제도 자체의 문제, 낮은 수당 및 홍보 등 노력 부족을 들 수 있음
 - 과도한 신청 자격 제한으로 일종의 문턱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선정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협소함
 - 대부분 실비변상적 수당의 지급에 머물러 있어 대리인의 참여 유인이 부족
-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 과감한 개방이 필요함
 - 신청 자격의 소극적 요건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삭제하고, 소득과 재산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제외하며 세액 한도 역시 3천만원으로 조정하여 국세와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함
 - 선정 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경정청구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로 확대하여 책임성과 전략적 조력을 기대함
 - 수당을 실비변상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모범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시의 예와 같이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회의 등 참석 시 건당 10만원과 여비 등 실비는 증빙에 따라 실비를 변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함
 - 홍보 강화,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정기적 통계 작성 의무화 등의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I. 검토 배경

■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입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청구에서 영세 납세자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아직 실적이 미미함
 -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은 연간 10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의 경우, 2020년 291건을 처리하였음(5개년 평균 235건 처리)
 - 선정 대리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부재한 상황임
 - 제도 자체가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홍보 역시 충분하지 않음
 - 실비 이상의 지원 등은 아직 없는 상태임

■ 선정 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연구가 필요함

-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세정지원의 강화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함
- 제도 시행 초기에 문제점을 바로잡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도의 정착이 어렵고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선정 대리인 제도의 부진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 선정 대리인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실비 지원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다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II. 선정 대리인 제도의 개요

1.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함)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불복절차를 알지 못해서, 불복절차의 과정이 복잡해서 또는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 비교하여 지방제도 권리구제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임
 - 국세의 경우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 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지방세의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국세와 비교했을 때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미비 및 조세운영 체계상 불평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2019. 12. 3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854호) 제93조의2를 통해 도입되어 2020. 3. 2.부터 시행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는 국세 분야의 국선대리인과 균형을 맞추려는 배경이 있음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것임¹⁾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부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 방식을 사용함

1)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126, 2019.11.27., 6쪽.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居所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무료 세무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은 당초 이미 도입되어 있던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을 연계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국세 분야에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영세납세자의 범위, 대리인 위촉 및 신청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국선대리인과 유사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함²⁾
 - 이미 시행 중인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를 모델로 하되, 지방세 고유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의 특색을 반영한 제도로 설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함
-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이해도를 높이고, 일선 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
 -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의 임기와 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시행을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준비가 필수적이었음
 - 초기에는 불복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할 것을 권고함
 - 조례의 개정을 촉진하기 위해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예시적으로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였음

2) 위형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지방세포럼, 제50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81쪽.

〈표 II-1〉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시행령 위임사항

구 분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리인의 임기·위촉	·(임기) 2년, 1번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촉)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중 세무업무 경력 5년 이상자 ※ 대리인 위촉 동의서, 서약서 등 서식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절차)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방법, 대리인 지정 사건 관리 방법, 광역-기초 간 대리인 지정 요청 및 결과 통지 방법 등 ※ 대리인 신청서,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

자료: 행정안전부(2020),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운영 계획”.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세 선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음
 - 광역과 기초 모두 대부분 기본조례에 선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등에 선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주목할 만한 자치단체는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기본조례 또는 납세자보호 관련 조례에 일부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표 II-2〉 기본 조례 외의 형식으로 선정 대리인 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

구 분		내 용	
광역	인천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경북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기초	경기	양주시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	군산시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남	영광군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경북	경산시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김천시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천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포항시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납세자임
 -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는 ① 인적 요건, ② 종합소득금액, ③ 소유 재산 가액, ④ 청구·신청세액, ⑤ 세목 그리고 ⑥ 소극적 요건으로서 고액·상습체납자 등이 아닐 것 등이 있음³⁾
 - 인적 요건 :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개인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함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은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함
 - 소유 재산 가액 : 소유 재산 가액은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의 평가 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일 것을 요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청구 및 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의 청구 또는 신청일 것을 요함
 -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을 요함
 - 소극적 요건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아닐 것을 요함

〈표 II-3〉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인적요건	과제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종합소득금액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의 평가 가액 합계액)
청구 및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정 대리인 자격요건

- 「지방세기본법」은 선정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시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3)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 및 제4항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p>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u>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u>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선정 대리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위촉대상 :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임기 : 2년이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수당 : 지식기부를 통한 무료의 불복업무 대리가 원칙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함
 - 인센티브 : 표창,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우대 등이 가능함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하는 선정 대리인의 자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하고 있음. 다만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하거나(경남) 시간적 조건 없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한 경우나(경북), 관련 경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강원)도 있음
 - 경상북도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 모두 2년 임기, 1회 연임가능을 규정하고 있음. 경북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함. 또한 경기·충북·강원·전북·전남·세종은 연임의 조건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을 요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모든 자치단체가 위촉배제사유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⁴⁾
- 16개 자치단체(경기 제외)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수당 및 여비를 모두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총 3곳(부산, 대구, 세종)이며, 부산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수당만 지급하는 자치단체(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제외)는 광주, 울산, 제주이며, 제주의 경우 도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납세자 변론 시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함
 - 실비변상적 수당만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10곳(서울,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며, 서울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하면서 공개세무법정 참석 등 의견진술 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고, 인천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수당에 준하여 심사수당으로 5만원, 참석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4) 위촉배제사유로는 ①법으로 정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임(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9조 제1항)

■ 신청 및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등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요건(소득 및 재산, 세액, 세목 등)을 검토하고,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의신청등인과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지방세기본법 §93의2②)

〈표 II-4〉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카드뉴스(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표 II-5〉 광역자치단체별 선정 대리인 자격요건 및 수당지급여부

구 분	경력	입기	연임	수당	여비
서울	3년 이상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부산	3년 이상	2년	○	○	○
대구	3년 이상	2년	○	○	○
인천	3년 이상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광주	3년 이상	2년	○	○	-
대전	3년 이상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울산	3년 이상	2년	○	○	-
세종	3년 이상	2년	○	○	○
경기	3년 이상	2년	○	-	-
강원	-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충북	3년 이상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충남	3년 이상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전북	3년 이상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전남	3년 이상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경북	풍부한 학식 및 경험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경남	5년 이상	2년	○	○ 실비변상적 수당	-
제주	3년 이상	2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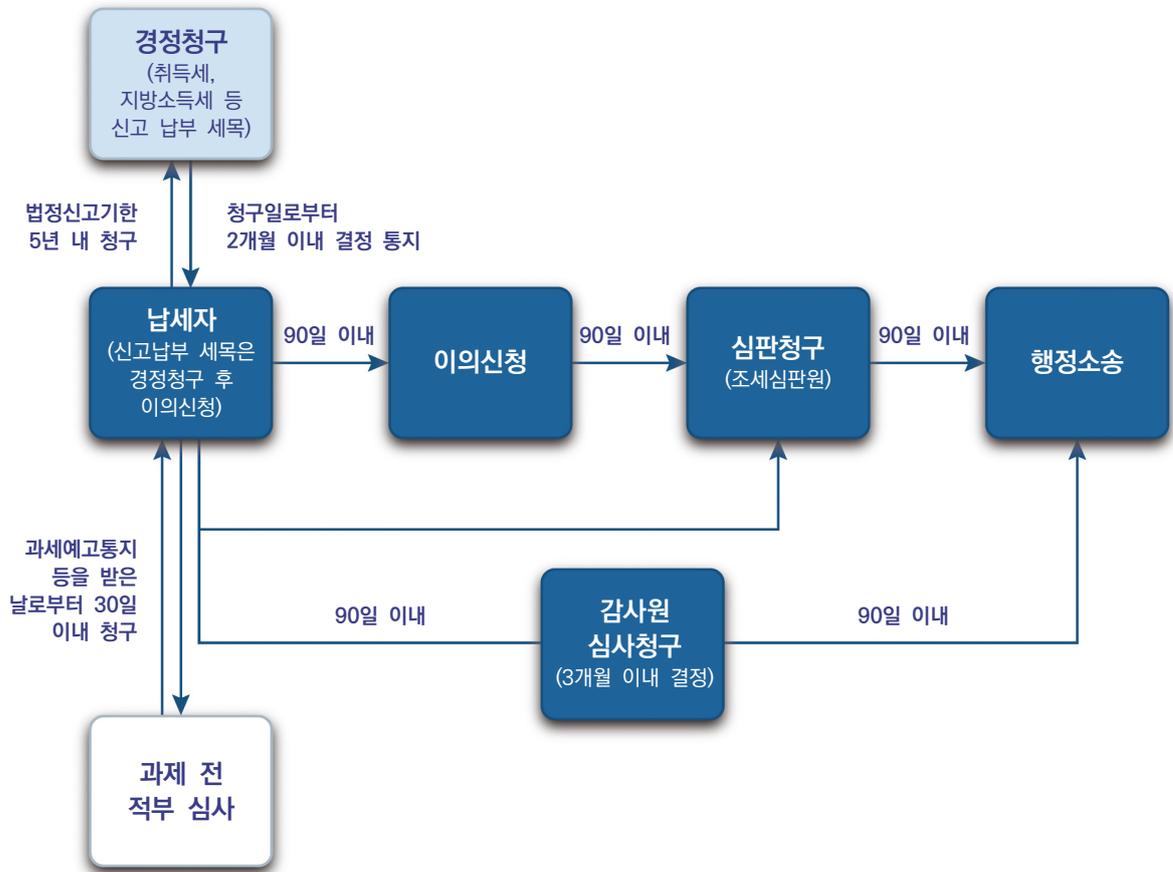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3.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업무 및 권한·의무

■ 선정 대리인의 업무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함
 -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만을 의미함
 -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림 11-1> 지방세 불복절차



자료: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 선정 대리인의 권한

- 선정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93조의2③, §93④)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정 대리인의 의무

- 선정 대리인은 임기만료 전 지정 사건에 대하여는 계속적 업무 수행 의무를 지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금지 의무도 부담함
 -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지방세기본법 §93의2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62의2⑥)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대리인의 의무로 ① 임기만료 전 지정 사건에 대한 계속적 업무 수행 의무와 ②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인천, 경기, 충북은 업무 수행 지속 의무를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인천특별시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33조(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의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3(경기도 선정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⑥ 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선정대리인에게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그 이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한 사례로서 또한 제주의 경우 업무 수행 지속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선정대리인의 임기를 당시 대리중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주	타 지방자치단체(예: 서울)
제9조의3(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에 대리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II-6〉 광역자치단체별 선정 대리인 의무규정 현황

지역	업무 수행 지속 의무	비밀유지의무	비고
서울	○	○	-
부산	○	○	-
대구	○	○	-
인천	-	○	업무 수행 지속 의무를 시장의 재량행위로 규정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관련 규정 없음
경기	-	○	업무 수행 지속 의무를 도지사의 재량행위로 규정
강원	○	○	-
충북	-	○	업무 수행 지속 의무를 도지사의 재량행위로 규정
충남	○	○	-
전북	○	○	-
전남	○	○	-
경북	○	○	-
경남	○	○	-
제주	○	○	업무 수행 지속 의무를 규정방식이 타 지자체와 상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III.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현황 및 타 제도와의 비교

1. 광역자치단체별 선정대리인 위촉 현황 및 운영 실적

- 광역자치단체별 선정 대리인 위촉 현황을 보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위촉하고 있음
 - 선정 대리인 구성은 대부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이루어지나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사와 회계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표 III-1〉 광역자치단체별 선정 대리인 위촉 현황

지역	인원	구성	지역	인원	구성
서울	20명	세무사 10명 회계사 10명	강원	8명	- ¹⁾
부산	9명	변호사 3명 세무사 3명 회계사 3명	충북	3명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
대구	3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충남	9명	변호사 3명 세무사 3명 회계사 3명
인천	7명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회계사 3명	전북	8명	변호사 3명 세무사 3명 회계사 2명
광주	3명	변호사 1명 세무사 2명	전남	6명	변호사 1명 세무사 5명
대전	3명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	경북	13명	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
울산	3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경남	14명	변호사 4명 세무사 7명 회계사 3명
세종	1명	세무사 1명	제주	5명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경기	14명	변호사 4명 세무사 6명 회계사 4명			

주1: 선정대리인 위촉 현황은 연구진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입수한 내부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강원도의 경우 선정대리인 구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공란으로 표시한 것임
 자료: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

- 17개 자치단체 중 선정 대리인 운영 실적이 있는 곳은 총 7개로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임
 - 구체적으로 부산 2건, 인천 1건, 울산 1건, 경기 4건, 전북 3건, 경북 15건, 경남 8건, 제주1건이며, 그 외 자치단체는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운영 실적이 있는 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신청 채택 사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채택(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기각·각하(이의신청)되었고, 인용된 사례가 없음
 - (부산) 20년 1건, 21년 1건 이의신청 대리가 있었으나 모두 기각됨
 - (인천) 21년 1건 이의신청 대리가 있었으나 각하됨
 - (울산) 22년 6월까지 1건의 이의신청 대리가 있었으나 취소됨
 - (경기) 22년 4건에 선정대리인이 지정됨
 - (전북) 22년 5건의 지원대상 중 총 3건에 선정대리인이 지정됨
 - (경북) 22년 10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선정대리인이 지정되었으나 모두 불채택되었고, 2건의 이의 신청에 선정대리인이 지정되었으나 1건은 기각되었으며 1건은 현재 진행중임
 - (경남) 20년 3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선정대리인이 지정되었고 1건은 채택 2건은 불채택되었음. 21년 5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선정대리인이 지정되었으며 4건이 불채택되고 1건은 대리인 설명 후 취하됨
 - (제주) 22. 7. 28. 기준 선정 대리인 신청 건수 1건임

〈표 Ⅲ-2〉 광역자치단체별 선정 대리인 운영 실적

구 분	실적	사건구분	청구세액	결정내용
부산	20년 1건	이의신청	8,976,380	기각
	21년 1건	이의신청	5,050,330	기각
인천	21년 1건	이의신청	4,899,540	각하
울산	21년 1건	이의신청	-	취소
경기	22년 4건	선정대리인 지정		
전북	22년 3건	선정대리인 지정		
경북	22년 12건	과세전적부심사	-	불채택
		이의신청	-	1건 기각 1건 진행중
경남	20년 3건	과세전적부심사	2,577,580	1건 채택
			1,226,660, 5,895,490	2건 불채택
	21년 5건	과세전적부심사	1,057,820~ 8,129,490	4건 불채택
			949,590	1건 취하
제주	22. 7. 28. 기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건수 1건			

자료: 광역자치단체별 내부자료

2. 타 제도와의 비교

■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와의 비교⁵⁾

-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개선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4. 3. 3. 국세청 내무 지침으로 “국선 세무 대리인 제도”를 시행함
 -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는 제도 시행 이후인 2014. 12. 23. 「국세기본법(법률 제12848호)」 제59조의2에 신설되어 법제화 되었음
 - 지방세 영역에서도 2016년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등 납세자가 처한 어렵고 복잡한 세금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권리구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의 부재로 권리구제 체계상 국세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5년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가 「정부3.0 우수사례 10선」으로 선정하고,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마을세무사 제도를, 조세심판원의 경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치 행정 서비스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음

〈표 III-3〉 국세 국선대리인 관련 법령

구 분	내 용
국세기본법	<p>제59조의2(국선대리인)</p> <p>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p>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p> <p>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국세기본법 시행령	<p>제48조의2(국선대리인)</p> <p>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5) 2021. 11. 19.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법을 위반한 납세자까지 세금을 들여 변호해야 하는가는 의문이 제기되어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음

구 분	내 용
	<p>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p> <p>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p>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p> <p>④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p>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p>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p>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p>제75조(국선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결청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삭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재결청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재결청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국선대리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재결청은 금품제공납세자 해당여부와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여부를 제34조제6항, 제36조제6항, 제65조제6항을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⑧ 재결청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6항의 방법에 따라 반기별로 사후 관리 하여야 한다. ⑨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 불복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⑩ 재결청은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제76조(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구 분	내 용
	<p>한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2.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3.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4. 청구세액 : 3천만원 이하 5.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p>② 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3.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청이 이의신청인등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기한 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등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확정된 종합소득금액 4. 제3호의 경우 재결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3일 이내제출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등에게는 재결청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 <p>③ 제1항제2호의 "소유재산가액"이란 이의신청인등이 신청일 현재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5. 주식 또는 출자지분 <p>④ 제3항의 소유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제4조제2항및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시가표준액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간주 전세금". 다만, 이의신청인등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작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이의신청인등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4.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8항제3호에따라 평가한 가액 5.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신청일 전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신청일 전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p>제7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결청은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가 재결청에 접수되는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사건을 분류하고, 이의신청인등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 서식)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등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 서식)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등이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p>제77조의1(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청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신청을 받았거나, 불복청구관련 상담과정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의2 서식)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별지 제25호의3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에는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관서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수록한 후 제76조의 요건 충족 시 제78조, 제79조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불복청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관서가 재결청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구 분	내 용
	<p>없이 해당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여 지정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청구인이 불복청구서를 당초 신청관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더라도 당초 지정된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영세납세자가 해당 재결청의 국선대리인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78조(국선대리인 지정 통지)</p> <p>① 재결청은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26호 서식)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지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전화·문자서비스·팩스 등으로 국선대리인 지정내용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p> <p>③ 재결청의 국선대리인 지정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한다.</p> <p>④ 국선대리인 지정 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국선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p> <p>⑥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된 후 제75조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동 재결청 내에 다른 국선대리인이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다만, 동 재결청 내에 다른 국선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 재결청의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제79조(국선대리인 지정 사건 관리)</p> <p>① 재결청은 국선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국선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재결청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지정사건 명세(별지 제27호 서식)에 청구일자·불복청구인·국선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지정 사건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80조(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p> <p>① 재결청은 해당 관서의 국선대리인 명단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제1항의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재결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에게 실비반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임
 -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납세자임
 - 신청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인적 요건, ② 종합소득금액, ③ 소유 재산 가액, ④ 청구·신청세액, ⑤ 세목 등이 있음
 - 국선대리인 자격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은 국선대리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59의2 ②, ④)
 -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선대리인 신청인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위촉, 선정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및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의 경우)에게 위임하고 있음(§48의2)

- 국세청은 2016년 3월부터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으로 건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⁶⁾
 -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20~2022)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사업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⁷⁾
 - 2019년 5900만원에서 2020년 5600만원으로 감소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56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

〈표 III-4〉 2022년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920	920	1,500	580	63.0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660	660	515	△145	△30.0
- 성실납세 지원	126	126	126	-	-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70	70	70	-	-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56	56	56	-	-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8	8	8	-	-
- 납세협력비용 측정	-	-	683	683	순증
- 납세협력비용 측정 모형 개발	-	-	42	42	순증

자료: 22년도 예산안 2112417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393쪽.

- 국세 국선대리인의 경우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 2474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0조는 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재결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6) 2020년도 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2022304), 237쪽

7) 2020년도 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2022304), 236쪽, 2021년도 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2103473), 275쪽, 2022년도 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2112417), 393쪽.

〈표 III-5〉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와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 주요내용 비교

구 분		국선대리인	선정 대리인
제도도입 시기		2014. 3	2020. 3
위촉대상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신청대상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제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신청자		개인(법인 제외)	개인(법인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청구·신청세액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적용제외 세목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보유 재산 범위	종합소득금 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 액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보유재산범위		부동산, 승용자동차, 골프·콘도미니엄회원권,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수당지급여부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건당 15만원)	수당(실비변상적 수당 포함) 및 여비 지급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2년에 출범한 제5기 국선대리인은 총 294명임

〈표 III-6〉 제5기 국선대리인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294	44	250
본 청	12	12	-
서울청	88	5	83
중부청	55	6	49
인천청	34	4	30
대전청	27	3	24
광주청	24	3	21
대구청	18	3	15
부산청	36	8	28

자료: 22.03.0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14쪽.

■ 마을세무사와의 비교

-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세금관련 고민 해결을 위한 세무상담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5년 서울에서 세무상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어 다음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임⁸⁾
- 마을세무사 제도는 법률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음
 - 광역 수준에서 마을세무사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 대전 단 2곳임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총 41개의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운영중임⁹⁾
-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함
 - 서울시의 경우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반면 대전의 경우 마을세무사의 상담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상담방법은 대면상담 및 비대면상담 모두 가능함
 - 대면상담은 마을세무사 사무실, 관할주민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며 비대면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마을세무사 확인 → 1차 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등) → 2차 상담(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 면담)의 절차로 진행됨
 - 마을세무사는 주로 세무상담,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서울의 경우 마을세무사의 역할로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건별 신청 및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을 제시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세무상담,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을 제시하고 있음
- 마을세무사의 상담(비대면, 대면 무관)은 재능기부로서 무료로 진행되지만,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8) 김보영,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1쪽.

9) 2022. 9. 15. 기준

〈표 III-7〉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제도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선정 대리인	마을세무사(서울시)
제도도입 시기		2020. 3	2016. 6
위촉대상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신청대상		불복청구(과제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세무상담,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의견서 등 작성 지원
신청자		개인(법인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적용제외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불복청구 관련 시 국세 제외
보유 재산 범위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보유재산범위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수당지급여부		수당(실비변상적 수당 포함) 및 여비 지급 가능	세무사 사무소 외 장소에서 대면 상담 시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의 비교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2006년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 있거나 권리보호 등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함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표 II-8〉 선정 대리인·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비교

구 분	선정 대리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촉·임명 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세무사	
지원 대상	신청자	개인(법인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고액·상습체납자 신청불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 있거나 권리보호 등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납세자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우선상담으로 일정 금액 이산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청구·신청금액	1천만원 이하			
	적용제외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보유 재산 범위	종합소 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 산가액			5억원 이하
보유재산범위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신청절차	납세자로부터 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 통지		납세자가 신청서 작성 후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후 14일 이내 민원처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마을세무사 확인 후 상담신청	
지원내용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대리업무 지원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등	국세·지방세 관련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불복청구 관련 상담은 지방세만 제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와외 비교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의 선임을 지원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 5. 1. 도입되었음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7. 10. 31. 개정된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제18조의2에 신설되어 2018. 5. 1. 시행되었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심판청구인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행정심판법 §18의2)
 - 국선대리인 자격요건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임(행정심판법 시행령 §16의3)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행정심판법 시행령 §16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함(행정심판법 시행령 §16의5)
 - 구체적 금액은 사건 관여 정도 및 관련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함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중 국선대리인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5곳임
 - 대부분 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하고 위원회 회의 2회 이상 출석시 50만원, 회의 1회 이상 출석시 40만원, 회의 불참시 30만원, 보충서면 제출 전 심판청구 취하 시 20만원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보충서면 제출 전(심판청구서 등 작성·제출) 심판청구 취하 시 3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하고 위원회 회의 불참시 40만원, 위원회 회의 1회 참석시 50만원으로 약 10만원 정도 높은 편임

〈표 III-9〉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보수 현황

지역	보수 현황	지역	보수 현황
인천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회의 2회 이상 출석 : 50만원 관련 사건 병합처리: 5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1회 출석: 4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불참): 30만원 보충서면 제출 전 심판청구 취하: 20만원	충북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회의 2회 이상 출석 : 50만원 관련 사건 병합처리: 5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1회 출석: 4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불참): 30만원 보충서면 제출 전 심판청구 취하: 20만원
울산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회의 2회 이상 출석 : 50만원 관련 사건 병합처리: 5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1회 출석: 4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불참): 30만원 보충서면 제출 전 심판청구 취하: 20만원	세종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회의 2회 이상 출석 : 50만원 관련 사건 병합처리: 5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1회 출석: 4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불참): 30만원 보충서면 제출 전 심판청구 취하: 30만원
경기	청구서 등 제출 후 심판청구 취하 : 3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불참) : 40만원 조정합의로 본안심판 전 심판청구 취하: 40만원 청구서 등 작성제출(위원회 회의 참석) 50만원 기본보수(40만원) 역할 및 관련사건 병합처리: 50만원	-	-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별표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참조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사건의 내용 및 규모, 청구인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함

IV.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

1.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 선정 대리인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로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다소 이르기는 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임
-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적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선정 대리인 운영 실적을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찾기 어려움
 - 국세 분야 국선대리인의 경우 3백 건 이상의 연간 실적이 있음

〈표 IV-1〉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단위: 건)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원 건수	2,777	355	452	385	283	256	237	413	396

자료: 22.03.0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14쪽.

- 인용 결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상의 성과도 미미함
 - 국선대리인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다소의 등락을 거쳐 20% 이상의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음

〈표 IV-2〉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내역

(단위: %)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국선대리인 지원 건	-	30.5	28.2	31.3	16.3	21.0	22.9	21.0
대리인 미선임 건*	16.3	17.3	19.0	14.3	13.2	10.3	7.5	8.6

자료: 22.03.0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14쪽.

- 초기 실적의 부진 원인으로는 일단 제도 자체의 문제를 들 수 있음
 - 국세와 비교해 보아도 과도한 지원 신청 제한으로 일종의 문턱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신청 자격에서 일단 체납자를 제외하고 있어 범위를 좁혀 놓았음
 -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어 자격 제한의 폭이 넓음
 - 지방세라고 하여 국세(3천만원)보다 적은 1천만원으로 세액 제한을 굳이 둘 필요가 없음

- 선정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협소함
 - 국세 분야 국선대리인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까지 대리할 수 있는데 비해 지방세 분야 선정 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 머물러 있어 업무 범위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뚜렷함
 -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 중 하나였던 국세와 비교하여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에도 맞지 않음
- 대부분 실비변상적 수당의 지급에 머물러 있어 대리인의 참여 유인이 부족함
 -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비변상적 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상담과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재능 기부만으로 실효적인 납세자 권리 보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과 비교해도 균형이 맞지 않음
-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및 홍보의 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도 시행 첫해의 지침 외에는 별다른 운영 지원이 없었고, 선정 대리인 운영 실적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조차 없어 운영 성과의 파악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함

2.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

- 제도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활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함
 - 체납자라 하더라도 미납 상태에서 불복절차를 밟고 있을 수도 있고, 체납 중인 과세분과 선정 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과세분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사안을 이유로 한 부당한 권리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명단공개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함
 - 납세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배우자의 재산까지 합산하여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부별산제에 어긋나고, 5천만원 상한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국세 국선대리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불리함
 -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함(민법 제829조)
 -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부부별산제에 의하도록 함(민법 제830조)
 -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선 안된다고 한 바¹⁰⁾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과세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 충돌하며 헌법상 혼인의 보호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¹¹⁾ 있음
 - 합리적 근거가 없는 세액 제한은 최소한 국세 수준인 3천만원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10)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11)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 선정 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선정 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경정청구로 확대함과 아울러 국세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로 확대하여 한 번 맡은 불복절차에서의 책임을 끝까지 수행하고 일관되고 전략적인 조력을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수당 지급을 현실화해야 함

-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사항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실비변상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모범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의 예와 같이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회의 등 참석 시 건당 10만원과 여비 등 실비는 증빙에 따라 실비를 변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함

〈표 IV-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생략)</p> <p>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u>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u>. <후단 생략></p> <p>2. (생략)</p> <p>가.~다. (생략)</p> <p>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p> <p>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1천만원</u>을 말한다.</p> <p>⑤ (생략)</p> <p>⑥ (생략)</p>	<p>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u>5천만원</u>. <후단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같음)</p> <p>가.~다.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를 말한다.</p> <p>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3천만원</u>을 말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상담, 고충처리 및 쟁송지원을 연쇄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제도 홍보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아직 납세자에게 폭넓게 인식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매년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함
- 매년 국세통계연보에서 국선대리인 운영 실적이 발표되듯이 지방세에서도 선정 대리인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통계로 분석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2022. 3. 7.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2022304]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2103473]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2112417]
위형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지방세포럼」, 제50권,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운영계획”, 202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2020. 3. 2.

■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납세자권익24(<https://www.nts.go.k>)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부록

<부표>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기본 조례 외의 형식의 조례로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구 분	내 용
경기 양주시	<p>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세무부서장”이란「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선정 세무대리인”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양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선정 세무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당시의 가액으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선정 대리인 신청) ① 이의신청 등이 접수되는 즉시 세무부서장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 사건을 분류하고, 이의신청인 등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 등이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1 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부서장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지체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은 이의신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점검하고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2조제3호의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6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2호서식)를 이의신청인 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지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이의신청인 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전화·문자·이 메일 등으로 선정 대리인 지정내용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지정 후 이의신청인 등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7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관리) ①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 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별지 제3호서식)에 청구 또는 신청일자·이의신 청인 등·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구 분	내 용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북	군산시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남	영광군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들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

구 분	내 용
	<p>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p> <p>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업무를 대리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경북	<p>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p> <p>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p> <p>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경산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42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p> <p>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김천시	<p>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20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p>

구 분	내 용
	<p>제21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제22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p> <p>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3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p> <p>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영천시	<p>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p> <p>제3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제3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p> <p>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영천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4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p>

구 분	내 용
포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p>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p> <p>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포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p>제42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